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

정 세 옥

명지대 교수 · 지방자치단체센터 소장

1. 문제의 제기

기획예산처는 2002년에 공적자금이자, 건강보험의료보조, 의무교육확대, 기초생활보장 등 신규 재정수요가 팽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예정인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대폭 인하하여 2002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련부처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5월 31일까지 작성·제출한 2002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개별사업별로 국고보조사업을 삭감하거나 또는

기준보조율을 인하·적용하였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액은 총 698개 사업에 19조 2,945억원으로서 2001년도 국고보조확정액 10조 3,494억원에 비하여 86.4%가 늘어났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편성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지방병무행정의 병무청 이관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원비보조금(보조율 100%) 전액(475억원)을 삭감하였다.
- (2)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입양아동양육비 보조율을 80%에서 70%로 낮추었고, 경로연금, 아동복지·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율을 70%에서 50%로, 노인·아동·여성복지기능 보강, 노인치매요양병원 보조율을 50%에서 40%로 각각 인

하·적용했으며, 지방문화원 육성보조금은 50%에서 0%로 삭제하는 등 법정기준보조율 사업의 보조율을 자의적으로 인하·적용하거나 삭제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생계급여 등 사업에 대해서만 현행 보조율 80%를 적용했다.

- (3) 문화학교운영보조금(50%), 문화관광축제보조금(정액) 등 임의보조사업의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거나 예년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했다.

이와 같이 기준보조율을 인하·적용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1987. 4. 3)을 개정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기준보조율을 상한(上限)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률을 하한(下限)으로 변경하며, 차등보조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1986. 12. 31)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예산안 편성방법과 법령개정안이 국고보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국고보조금 : 제도와 문제점

가. 국고보조금제도의 이념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징의 하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점하는 비중과 ‘자주재원비율’이 낮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조세총액중 지방세수입비중이 매우 낮은데다가 매년 더 떨어지고 있다. '95년에는 21.2%였으나, '97년에는 20.0%, 2000년에는 19.0%로 계속 낮아졌다. 2001년에는 19.7%로 다소 상승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세수입비중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세(2조9,767억원) 신설에 따른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19.7%에서 17.0%로 감소되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하다. 즉,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재정자립도’는 57.6%인데 최고(경기 과천시) 96.3%로부터 최저(전남 장흥군) 9.3%에 이르기까지 실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146개(59%)이며, 자체수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29개(12%)나 된다. 우리 나라 지방세는 재산관련세를 주종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의 변동에 따르는 세수증가율이 국세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이 심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명확한 사무배분을 한 다음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특히 국가가 그 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력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비용부담을 지우게 되어 가뜩이나 재

정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우리 나라 국고보조관련법들은 이런 맥락에서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11조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업,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등을 국가사무로 규정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들 국가사무는 지역성보다는 전국적·광역적인 최저수준과 균형의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업이나 사무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에 용도를 정하여 재원을 교부하고 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이해가 관련된 사업이나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처리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의 이해관계정도에 비례하여 국가는 일정한 보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비율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보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기준보조율, 절차 등을 규정하여 중앙정부가 보조율을 낮추는 등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나. 국고보조금제도

우리 나라 국고보조금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 근거는 개별법령에서 규

정하고, 기준보조율은 ‘보조금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다. 예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등과 재해대책관련사업은 보조율을 개별법령과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준보조율의 유형은 정률보조사업, 정액보조사업, 임의보조사업의 세가지가 있다.

(1) 정률보조사업이란 기준보조율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142개가 있다(<표 1> 참조). 보조금법시행령은 국고보조사업과 기준보조율을 열거하고 있는데, 국가의 이해관계정도에 따라 국가위임사업에는 100%, 국가시책사업에는 80~70%, 국가이해우선사업에는 50~40%, 지방이해우선사업에는 30~15%로 되어 있다(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01. 9: 40).

(2) 정액보조사업이란 사업의 성격상 정률보조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사업으로서 농공단지조성지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지원,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오지·도서교통지원, 지방문예회관건립,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 및 장비 등 동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15개사업에 적용된다. 보조금액은 예산편성시에 결정한다.

(3) 임의보조사업이란 사업의 성격, 관련법령 등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매년 예산으로 정률(100%~20%) 또는 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보조사업이 2001년에는 205개, 2002년에는 541개에 달하였다. 예컨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3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50%), 장보고축제(50%),

<표 1> 정률보조사업의 예

기준보조율	사업의 성격	주요사업내용(예) 및 사업수(142개)
100%	국가위임사업 (순수국가목적사업)	일반여권발급, 지방병무행정 지원, 국가방조제 개·보수, 농어 민직업훈련지원, 지적도면 전산화, 전국체전운영 등 7개사업
80-70%	국가시책사업	일반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어장정비·정리, 고용촉진훈련, 도 서종합개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방사업, 결핵환자보호 시설 운영, 화장장·납골당·화장로시설 등 27개 사업
50-40%	국가이해우선사업	119구조·구급대 장비, 조림사업, 임도건설, 지방문화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농산물공판장건설, 육림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78개사업
30-15%	지방이해우선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쓰레기매립시설, 공립박물관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과수·채소·화훼·특작 생산유통지원, 농촌 특산단지 육성,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 30개사업

※ 출처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서 발췌.

공공근로사업(50%)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비율의 변동추이를 보면 '97년에 37.2%, '98년에 32.1%, '99년에 34.9%, 2000년에 36.7%, 2001년에 32.9%로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으나 연평균 35% 수준에 달한다.

넷째,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장의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보조금신청주의). 시·군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은 광역시장)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도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동법 제7조 ①항).

시·도지사는 보조금예산안의 편성과정에서 그 관할구역 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의견을 검토·심의하게 되어 있다(동법 제11조, 제15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관련부처와 시·도관계관이 참여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다.

다. 운영실태

첫째, 보조사업에 따라서는 국고보조율이 지나치게 낮아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 중에는 지방비부담능력이 없어 예산계상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신청 후에 반납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을 하고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수입으로 지방비부담을 충당하는 사례도 있다.

셋째, 보조사업이 각 중앙관서별로 기능에 따라 예산에 계상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세분화,’ ‘영세화(零細化)’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소액 국고보조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는 각 부처가 소액보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효율적 사업시행이 제약되고 있으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없다.

넷째,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시행토록 하면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364개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은 16

조 7,848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가는 61.7%인 10조 3,494억원을, 지방자치단체는 32.9%인 5조 5,234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표 2> 참조).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지방예산규모 64조 4,892억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0%였다(행정자치부, 2001c: 4). 특히 순수한 국가목적사업을 시행하는데에도 지방비를 31%나 부담시키고 있고, 국가시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지방비 30%를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관하여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과중한 지방비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6%였고, “불합리한 보조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0%, “영세한 보조사업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9%로 집계되었다(행정자치부,

<표 2> 보조사업 유형별 자원부담현황(2001년도)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수	사업비						
		계	국비	%	지방비	%	수익자 부담 등	%
계	364	167,848 (100.0)	103,494	61.7	55,234	32.9	9,120	5.4
순수국가목적사업	96 (26.5%)	21,550	14,797	68.7	6,742	31.3	11	-
국가시책 지방수행사업	179 (49.4%)	92,333	60,230	65.2	27,602	29.9	4,501	4.9
국가·지방공동이해사업	87 (24.1%)	53,965	28,467	52.8	20,890	38.7	4,608	8.5

※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2001. 6), 4쪽.

<표 3> 국가가 이양한 사무 1건당 처리비용

(단위 : 억원)

사무건수	총소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경상적경비	B/A
332건(A)	1,775(B)	696	348	731	5.34

※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2001. 6. 6). 과중한 지방비부담을 완화하려면 보조율을 인상해야 하므로 결국 지방비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76%에 달하였다.

다섯째, '91년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는 1,235건이었으나 사무이양에 따르는 재원이 전조치는 미흡했다. 사무이양에 따르는 자치단체의 건당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98년도에 국가가 지방에 이양한 사무 332건에 대한 직·간접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분석하여 산출한 바에 의하면 건당 처리비용은 5억3천4백만원이었다(<표 3> 참조). 이 비용으로 1,235건의 비용을 계산하면 총 소요경비는 6,595억원에 달한다.

국가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에 따라 지방사무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력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무비 및 인력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여섯째, 정부는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급여액 등)을 직접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지방양여금 중 지역개발사업재원을 통하여 보전

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보전액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충당되고, 양여금사업 시행에 따르는 지방비부담이 추가되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96년도 이후 전환대상인원 8,211명에 대한 재원소요는 2001년도에 약 3,120억원에 달하는데 재정보전액은 주세수입의 8.5% 해당액인 1,826억원에 그쳐 인건비보전 충족율은 58.5%에 그쳤다(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2001. 6).

3.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율 인하적용에 대한 비판

가. 기준보조율의 인하·적용

이와 같이 지방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예산처는 2002회계연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느닷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대폭 인하·적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2002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2002년도 국고보조금총액은 2001년도 보조금총액의 90%수준인 9조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감소된

원인은 일부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종전기준보다 인하·적용했거나 보조사업예산 계상요구 자체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준보조율 80% 이상은 70%로, 50~70%는 50%로, 50%는 30%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국고보조율을 인하하거나 전액삭감한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사업으로는 받기반정비, 경지정리, 토지개량 등 사업인데, 기준보조율을 80%에서 70%로 낮춘 외에, 사회복지공무원인건비 보조기준율을 80%에서 70%로,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기준율을 50%에서 30%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기준율을 종전의 33%에서 30%로 인하·적용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보조금 전액삭감사업으로는 주민등록발급지원, 지방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 지역특화사업, 한방의료 지역보건사업, 중소도시 보건소신축 등을 들 수 있다.

나. 제기되는 문제점

첫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기준보조율 인하에 따르는 지방비 추가부담능력이 없다. 현행 기준보조율은 '87년에 '보조금법시행령'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보조율의 기본 틀로서 기능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평균 15% 인하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할때 지방비 1조 5,52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고부담률은 61.7%에서 52.4%로 낮아지는 반면 지방비부담률은 32.9%에서 42.2%로 높아진다(<표 4> 참조).

그런데 자치단체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총 10조 3,948억원(자체사업비 8조 9,902억원, 예비

<표 4> 기준보조율 평균 15% 인하시의 지방비 추가부담액 추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수익자부담 등
2001 국고보조사업(A)	16조7,848 (100%)	10조3,494 (61.7%)	5조5,234 (32.9%)	9,120 (5.4%)
국고보조기준율 15% 인하시(B)	16조7,848 (100%)	8조7,970 (52.4%)	7조758 (42.2%)	9,120 (5.4%)
A-B	-	△1조5,524	+1조5,524	-

※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2001. 6), 2쪽.

<표 5> 2000년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실적

(단위 : 억원)

지방비 부담계획	부담실적				미부담
	계	자체재원 부담	지방채발행 부담	채무부담 행위부담	
50,698 (100.0%)	49,451 (97.5%)	39,916 (78.7%)	6,559 (12.9%)	2,980 (5.9%)	1,247 (2.5%)

※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2001. 6), 5쪽.

비 1조 4,064억원)이다. 여기서 자체사업비는 지역숙원사업 등을 위해 지출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재해대책 등의 용도로 집행되고 있어 사실상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분으로 충당할 수가 없다. 국고보조기준률을 평균 15% 인하할 때에 소요되는 1조 5,524억원(예상)은 가용재원의 14.9%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대다수 자치단체는 이를 추가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준보조율을 15%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로 재정형편이 더 악화되어 고유사무 수행에 더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자치단체 중에는 지방비부담능력이 없어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나서 지방비부담을 위해 지방채발행 및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예가 있다. 2000년도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5조 698억원 중 12.9%인 6,559억원은 지방채로 부담했고, 5.9%인 2,980억원은 채무부담 행위로 부담했다(<표 5> 참조). 그렇게 하고서도

<표 6> 2001년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양여금	지방비			
		계획(A)	실적(B)	미부담(C)	C/A
계	47,795	22,723	18,857	3,866	17.0
도로정비사업	22,928	11,546	8,717	2,829	24.5
농어촌지역개발사업	3,861	1,199	1,158	41	3.4
수질오염방지사업	12,250	9,343	8,066	1,257	13.5
청소년육성사업	329	214	236	+22	+10.3
지역개발사업	8,427	421	660	+239	+56.8

※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2.5%에 해당하는 1,247억원의 지방비부담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셋째, 지방도로건설 등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도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다. 2001년도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실적을 보면 도로정비사업에 24.5%,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3.5%,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3.4%를 부담하지 못하여 차질을 빚었다(<표 6> 참조).

다. 기획예산처의 기준보조율 인하의 부당성

첫째, 2001년에 지방교부세총액이 내국세총액의 13.27%에서 15.0%로 상향조정되자 기획예산처는 2002년 국고보조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지방교부세와 연계하여 국고보조기준율을 인하·조정하려는 행위는 이론상 타당성이 없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입의 결함을 보전하고, 지역간 경제력 및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며, 지방행정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적 수요,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국세수입 대 지방세수입 비율이 약 80 : 20으로 지방세수입 비중이 매우 낮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지방세수입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 하에서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조세체계의 구조상 지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상한 것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자치단체 세입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고 국가사무이양 등에 따르는 지출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따라서 교부율 인상을 국고보조율 인하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인하하라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기준보조율을 인하·적용하려는 것은 예산주무부처의 무지의 소치이거나 횡포이다.

둘째, 재정지출 면에서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쓴다는 기획예산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집행비율이 '95년에 '48 : 52'이던 것이 6년 후인 2001년에는 '45 : 55'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의 '55'에는 교육재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육재정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7'에 불과하다. 일본은 국가 대 지방의 비율이 자치교육·자치경찰을 포함하여 24 : 76으로서 우리와는 비교가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예산과 예비비의 합계액인 가용재원은 일반회계의 22%에 불과하다. '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교육비지출확대, 사회보장 등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의 지출증대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비율이 높아진 것

이다.

셋째,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인상으로 국가재정은 어려워지고 지방재정은 풍족해졌다는 견해에도 동의할 수 없다. 2001년도 지방재정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교부세 증가액은 1조 1,814억원인데 비하여, 지방교부세율 인상 이후 자치단체의 교육재정추가부담, 기초생활보장지원 등으로 늘어난 법정지출부담액은 1조 4,308억원으로¹⁾ 오히려 2,494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 일본은 기준재정수요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달액의 100%를 지방교부세로 보전해주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미달액의 77.8%를 교부하는데 그치고 있어²⁾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앞으로도 무상의무교육확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堡地) 보상, 각종 개혁입법의 제·개정에 따라 지방비부담이 팽창할 것이므로 지방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자치사무적 성격을 가진 국고보조사업을 삭감 또는 감액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논리는 타당하다.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사무·지방사무를 구별하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균형적·통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로 국가목적사업·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다수의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적 이해와 지방적 이해가 혼합된 사업으로서 국가-지방간의 사무배분기준이 모호하고 법령상으로도 명확히 배분되어있지 않아 엄격한 구분이 곤란한 실정이다. 프랑스와 같이 행정기능을 이양할 때에는 어느 한 자치계층에 기능을 총체적으로 이양하고(transferts en bloc), 국가와 지방자치계층간에 명확한 기능배분을 하여 자치계층별 전문화(spécialisation de chaque niveau d'administration locale)를 도모하며, 사무를 이양함에 있어 국가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재원도 함께 이양하는(exacte compensation des transferts de charges) 합리적인 경비분담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정세욱, 2001: 208 ; Une Nouvelle Répartition, 1983: 2). 일본과 같은 사무구분을 하고 경비분담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의 성격과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지 않고 자치사무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 하여 갑자기 보조사업을 삭감

1) 지방비 추가부담(1조 4,308억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교육재정 추가부담 : 연간 6,384억원(2001년도에 총 4조 7,673억원)
 - 시·도 일반회계의 교육재정 추가부담 : 2,161억원
 - 학교용지확보소요액의 50% 부담 : 연간 3,000억원(추정)
 - 중등교원인건비, 결식아동중식비, 저소득자녀 PC교육비 : 1,223억원
 - ※ 지방교육세 신설에 따라 2조 9,767억원(2001년도) 교육재정에 별도 이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확대 등 : 연간 4,198억원('01. 총 3조 7,337억원)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비(4년 기준) 추가부담 연간 326억원
- 공무원연금 추가부담(3,200억원), 도서관정보화(연간 200억원) 등

※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2) 기본적 재정수요 충족률 = 보통교부세총액(9조 3,121억원) / 재정부족액총액(11조 9,859억원) × 100

하거나 보조율을 인하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자치단체가 불요불급한 공공청사를 호화롭게 건립하는 등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부산·대전·강릉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사를 크게 건립하여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건립한 대부분의 청사(726개)는 분산청사를 통합하거나, 노후건물을 재건축한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 추세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청사 건립문제를 들추어 지방재정이 풍족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건전한 지방재정운동을 유도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행정자치부는 투자심사, 지방채발행 승인심사 등을 통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라. 국고보조율 인하의 문제점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고보조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국고보조율을 낮춰 국가부담을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하겠다는 발상에는 반대한다. 국고보조율을 낮추면 보조사업추진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수혜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는 법령상·절차상·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

(1) 법령상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와

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법령으로 정한 취지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국가시책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운영토록 하려는데 있다. 국가나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국고보조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프랑스·영국·독일·일본과 같이 명확한 기능배분을 하고, 이에 따라 이 경비분담율을 정한 다음 이에 의하여 국고보조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리적이며, 국고보조율 법정주의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2) 절차상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수혜민의 3주체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려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추진주체인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며, 그 시기는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인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조율을 인하·적용해서는 안된다. 예산안 초안이 확정되기 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지금도 사업에 따라서는 국고보조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자치단체 중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지방비부담능력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예가 적지 않다. 즉,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는 아예 국고보조

금 예산계상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도 지방비를 도저히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 예컨대, 대전 유성구는 재활용 자동선별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5억7천만원을 받았으나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반납했으며, 전남 함평군은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국비 4억8천만원을 받았으나 지방비부담을 할 재정능력이 없어 반납하고 말았다(행정자치부, 2001a: 4).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을 하고 지방비 부담을 지방채수입으로 충당하거나, 채무부담행위로 해결하기도 한다. 예컨대, 강원도 철원군은 임진강 수계의 하도정비사업 보조를 받으면서 지방비부담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십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전북 순창군은 경지정리사업 보조금수령에 따르는 자비부담을 위해 채무부담행위로 10억원을 마련했다(행정자치부, 2001a: 4).

이와 같이 현행 보조기준틀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더라도 지방비부담을 하기 힘겨운 상황인데 현행의 보조율을 더 인하하게 되면 사업포기 및 중단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국가시책추진에 차질을 빚어 정부신뢰에 흠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보조율 인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추진에 대한 의견

가. 주요개정안 내용

이 법은 '86년 12월에, 동법시행령은 '87년 3월에 각각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후 지금까지 기준보조율의 기본 틀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인하하였고 이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부수법안 형식으로 이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고보조금은 ‘상한(上限)’을,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율은 ‘하한(下限)’을 규정하도록 보조율 책정 원칙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재정력 차이에 의한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책수행상 필요시에 한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보조금 신청·관리제도를 변경하며, 국고보조금 통합신청, 영세·소규모사업의 통합, 보조금의 상호전용, 보조금 교부신청제도의 생략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행정자치부, 2001b).

나. 기준보조율 원칙의 변경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기준보조율은

‘상한’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률은 ‘하한’으로 보조율의 기본원칙을 수정하려는데 대하여(법개정안 제9조) 반대한다. 그 이유는 법령상 정해진 국고보조율을 상한으로 바꾸면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 매년 국고보조율이 달라질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자체재원부담에 대한 예측을 하기 곤란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기준보조율을 50%로 정해놓고 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과정에서 40%, 30%로 적용한다면 자치단체가 어떻게 보조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국고보조율 ‘상한’개념은 국고보조율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국고보조율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선진국 중에서 국고보조율을 상한으로, 지방비부담률을 하한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다. 차등보조율제도의 예외적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한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책 수행상 필요시에 차등보조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데 대하여(법개정안 제10조 ①항) 반대한다.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력에 따라 지방비부담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안대로 개정되면 재정력의 격차해소를 위한 차등보조율제도가 자칫 국가정책과제 수행을 위

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로 왜곡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차등보조율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1b). 그러므로 이 규정을 개정하지 말고 종전대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폐지

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주체로서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에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이 위원회가 불필요한 것이 아닌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좋은 제도를 폐지하려는 의도(법개정안 제15조)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보조금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어려움과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마. 국고보조금예산의 30일 이내 확정 통지

현행법은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그 보조사업을 수행할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개정안은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통지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법개정안 제12조 ①항). 그러나 이와 같이 통지기일을 늦추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순기와 맞지 않게 되어 자치단체의 추경예산편성을 일상화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한은 시·도는 11월 11일이고, 시·군·자치구는 11월 21일이며,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기한은 시·도는 12월 16일까지, 시·군·자치구 12월 21일까지이다.

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생략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생략하도록 개정하는 것(법개정안 제16조 단서)은 국고보조금 집행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착수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려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제도가 불필요한 제도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교부신청을 생략한다’고 규정하지 말고, ‘...교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도 국고보조 부담금의 세부에 걸친 보조조건이나 번잡한 교부절차 등이 행정의 간소화와 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일본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1997), 2000년에는 통합보조금제도를 설치했다.

사. 보조금관리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개정안에 대하여는 찬성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다(법개정안 제4조 ⑤항). 시·도지사는 시·도 및 소속 자치단체별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한 보조금예산을 중앙관서의 구분없이 종합하여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신청내용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둘째, 영세·소규모사업을 통합·운영한다는 내용이다(법개정안 제20조 ①항 단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예산 교부단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다. 동일회계·동일중앙관서의 국고보조금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법개정안 제22조 ①항 단서), 지역의 실정 및 여건과 사정변경에 따라 보조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법개정안 제23조 ②항).

5. 개혁방향 및 결론

가. 요약

기획예산처는 2002년 국고보조사업예산

안 편성과정에서 법정보조기준율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인하·적용함으로써 앞으로 지방비부담 과중에 따른 보조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첫째, 기획예산처가 임의로 기준보조율 이하로 낮게 적용함에 따라 국가의 시책추진 및 주민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에 차질이 우려된다.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541개 사업)은 법정기준율이 없으나, 국가시책·주민복지향상·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임의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보조율을 인하할 때에는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 자치단체·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엄격한 사무구분이 안되어 있어 기능배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지방의 고유사무임을 이유로 내세워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려는 행위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설령 지방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해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조금을 삭감할 때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숙원사업이 축소되어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셋째, 국고보조금의 축소가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보조금을 삭감·인하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상 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도 지방비부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반납

하거나, 사업시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전술하였다.

나. 개혁방향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사무수행 및 국가시책추진을 위하여 국가가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 조직운영에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경비절감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지방적으로 집행·구현하는 것은 지방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기획예산처)가 국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기준보조율을 일률적으로 인하·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는 것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떠넘겨 자칫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비록 지방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국가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련 정도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러한 국고보조금제도의 존재이유(raison d'être)와 법령을 무시한 채 기획예산처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기준보조율을 임의로 인하하고 기준보조율을 '상

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률을 '하한'으로 바꾸려는 발상을 하는 것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러한 발상은 이론상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 유례가 없다. 보조기준율을 법령으로 정한 취지는 국고보조사업을 안정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령상 규정된 법정기준율을 준수해야 한다. 157개 사업은 기준율이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사업은 예산편성시 기준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적용해온 기준율을 법정율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고보조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업량을 조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보조사업의 내용은 각 부처의 기능에 따라 결정·운영되고 있어서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영세화(零細化)되어 있다. 이를 세목(細目)지정보조금(subventions spécifiques)이라고 한다(Bouvier, 1998: 94, 96). 중앙정부가 소액보조를 결정하고 있는데 소액국고보조사업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단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영세·소규모 보조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한 부처 내에서의 국고보조금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조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선진제국에서는 세목지정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더라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용도까지 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Bouvier, 1998: 94, 96 ; 정세욱, 2001: 685).

셋째, 국고보조 부담금의 교부를 통한 각 부처의 관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혜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자주적 행·재정운영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일본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1997. 7),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그 총액 및 용도의 범위만을 지정하고 보조금으로 충당할 경비의 세목·수량·지방비부담비율 및 대상사업의 구성비율을 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이른바 포괄보조금(block grants, subventions en bloc)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정세욱, 2001: 686). 일본은 2000년도에 '통합보조금제도'를 신설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시행'토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하는 사업계획을 근거로 국가는 해당연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 한도금만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배분 한도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연도에 실시해야 할 구체적 사업의 실시 개소·내용 등을 정한 다음 보조금을 신청하면, 국가는 이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교부결정 후 사업개소 등의 변경에 국가의 관여를 적극 배제하고 있다(일본국 총무성, 2001: 21).³⁾

3) 통합보조금에는 두가지 타입이 있다.

타입 I - 국가가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구체적 사업개소와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통합보조금. 타입 I의 2001년도 주요사업은 2급하천(163억엔), 공영주택 등(2,384억엔), 공공하수도

넷째, 국고보조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성격과 재원부담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무의 성격, 적정기준보조율, 재원분담체계를 심도있게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기준보조를 인하·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움직임이 가뜰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중앙이 지방의 목소리를 듣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율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법시행령 개정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령상 기준보조율이 규정되지 않은 임의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의 지원체제를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보조금액을 감축해야 한다면 사업량을 줄이되 보조율은 현행

대로 유지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지방의 고유사무적 성격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행정서비스의 균형적·통일적 보장(national minimum)과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해 국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지방의 고유사무이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세욱(2001), 「지방자치학」, 서울: 법문사.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2001. 9), 「제10차 韓・日 內政關係者 세미나 發表資料」, 韓・日 內政關係者 交流會議.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2001. 6),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관련 검토,” 내부자료.
- _____ (2001a),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심의동향 및 우리 부의 입장,” 내부자료.
- _____ (2001b),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 검토,” 내부자료.
- _____ (2001c), “2002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 Bouvier, Michel(1998), *Les finances locales*, 5e Edition, Paris: L.G.D.J.
- “Une Nouvelle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Démocratie Locale*, n°25,

(대규모사업은 제외)(1,298억엔), 주택시가지 정비 종합지원사업 관련 통합보조금(366억엔) 등 합계 5,503억엔에 달하였다.

타입 II - 국가가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일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복수사업을 체계적이면서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보조금. 타입 II의 2001년도 주요사업은 지역창조에 관한 통합보조금(600억엔), 주택단지 관련 공공시설 등 정비 촉진사업 관련 통합보조금(1,011억엔) 등 합계 1,759억엔이었다.

일본국 총무성(2001. 9), 21쪽.

Bulletin de la Direction Générale
des Collectivités Locales, Ministère
de l'Intérieur(mai 1983).

石原信雄〔編著〕(1977), 現代地方財政運
營論, 東京: ぎょうせい.

日本國 總務省(2001. 9), 「제10회 日・韓
內政關係者 세미나 發表資料」.
(일본)地方分權推進委員會(1997. 7. 8) 第2
次 勸告.

